

4단계 두뇌한국(BK)21 「4차산업혁명시대 성장과 공존을 선도하는 사회복지 미래인재 양성단」 사업 운영 세부지침(안)

제정 및 시행 2020. 9. 1.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침 제1호

개정 2022. 11. 30.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침 제2호

개정 2023. 02. 27.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침 제3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4차산업혁명시대 성장과 공존을 선도하는 사회복지 미래인재 양성단(이하 ‘사회복지학과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사회복지학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차원적 불평등완화를 위한 지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2. 사회적 고립 및 배제 해소를 위한 지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3.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양성
4. 과학적 분석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5. 다학제적 소통 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제3조 (교육연구단의 구성) ① 사회복지학과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단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사업 교육연구단

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 ② 교육연구단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교육연구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⑤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서 상의 위원회(자문위원회,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연구지원관리위원회, 국제화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제5조 (교육연구단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 사업의 총괄 수행
 -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③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6. 교육연구단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및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의 자격 및 선정 기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참여교수), 제28조(참여제한자)」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을 준용하며, [별표1]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한다.
2. 참여교수의 변경 기준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를 준용한다.
3. 참여교수의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자격 기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참여대학원생 등)」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을 준용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원생 선발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제시한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자
2.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필요 시 면접 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은 수시로 충원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활동 및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에 참여하여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업적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학습 및 연구계획과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매 학기 종료 시점 마다 교육연구단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한 학기 이상 교육연구단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은 석사기준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포스터 발표 이상, 박사기준 논문 투고 및 포스터 발표

1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참여대학원생들이 부과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교육연구단의 필요에 의해 단장이 요청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7. 참여대학원생은

④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지원대학원생에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한 지 2년 이내 석사과정생: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 이내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수료생: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6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수료생: 월 100만 원 이상

⑤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연구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출국의 경우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2. 해외 출국 기간이 28일 넘지 않도록 하며, 해당 월 연구장학금은 휴가 계획서 제출 후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일할 계산 후 지원 또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단, 출국 기간 동안의 연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 출국 기간이 28일이 넘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제9조 (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또는 연구교수라 하며,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의 자격 기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신진연구인력)」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신진연구인력)」을 준용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절차는 본교의 연구원 임용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교육연구단은 필요시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이때 교육연구단에 적합한 인력을 [별표3] 신진연구인력 선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채용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교육연구단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선발한다.

가. 전문적 역량(사회복지 전문지식, 연구 및 실천경력 등)

나. 인성 및 협업 능력

4. 신진연구인력 채용 심사위원은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5.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적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진연구인력은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학술대회에서 연 1회 이상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채용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연구실적 미달 시 1차 경고 조치, 경고 후 6개월까지 목표 미달 시 재계약포기 조치를 한다.

4.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업적에 관련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단에 해외학자를 초빙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자격 기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해외학자)」 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의3(해외학자)」 를 준용한다.

2. 해외학자 초빙 시 강사로 지급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사업비 집행은 연구재단 및 산학협력단 지침에 준거하여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3. 해외학자의 초빙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교육연구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2호에 따른 사업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직원) 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소속 행정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채용 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선발한다.

2.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임용 방법, 결격 사유 및 구비 서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정직원 고용 시 급여, 법적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
4. 교육연구단에서는 행정직원에게 명절휴가비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사업단 운영 기여도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평가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참여교수 성과급은 예산 한도 내에서 참여교수 간의 경쟁을 통한 심사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비율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지원 액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교수 1인 연간 총액 48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 ②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별표4]와 [별표5]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학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비율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성과급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자는 교육연구단에 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단은 행정직원에게 업무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 장은 [별표6]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매학기 행정직원 평가배점표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2. 교육연구단장은 행정직원 평가배점표를 바탕으로 성과급의 지급 유무 및 성과 지급액을 예산 내에서 정한다.
- ⑥ 성과급 지급은 사업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⑦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⑧ 본 규정 이외 기타 세부사항 및 예외사항에 관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 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① 국제협력지원 자격 기준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를 준용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별표7]의 기준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제협력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를 수 있다.

③ 국제학술대회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항공료 및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에는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단, 위탁기관과 체결이 아닌 경우 항공료, 체재비만 지원할 수 있다.
4. 그 외 지원 내용은 연구재단 및 본교의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단장이 선정하는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교육연구단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④ 교육연구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금)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에게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에 대한 평가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에서 결정한다,
2. 포상금은 해당 월 연구장학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3. 포상금은 실적 제출일이 매달 장학금 산정 이전일 경우 해당 월로 지급하며, 이후일 경우 차월 지급한다.
4. 포상금은 참여대학원생 1인 학기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록 한다.

5. 포상금은 교육연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2. 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

기여도	평가항목		배점(1회 기준)
교육 활동	교육연구단 운영	- 운영위원회 및 회의참석 -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평가 - BK 교육과정혁신 기여도 : 1개 개설 10점, 2개 이상 개설 20점	10점 10점 10점 (최대20점)
	교육연구단 행사	-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참석 횟수 : 학술행사, 콜로키움, 세미나, 워크숍 등 - 해외석학 초청 및 특강 초청 기여 : 초청 1회당 20점, 2회 이상 초청 40점	5점 (최대30점) 20점 (최대40점)
	참여대학원생 지도	- 지도학생 참여대학원생 포트폴리오 지도	지도 비율/ 학생 수
	RT 참여	- RT 연구토론회 참석 : 참석자 3점, 토론자 5점 - RT 참여 및 지도 :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연구팀 등록 기준 : 1팀 당 10점, 3팀 이상 30점	(최대20점) (최대30점)
연구 활동	논문실적	- 국제저명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1편당 50점*
		- 국내 등재지(후보지) 및 기타 국제학술지	1편당 30점*
	학술대회 발표	- 구두(Oral) 발표*	국제 50점 국내 20점
		- 포스터(Poster) 발표*	국제 20점 국내 10점
	저·역서	- 저서(연구활동 관련) - 역서(연구활동 관련)	1편당 50점* 1편당 30점*
	기타	- 연구비 수주 실적 등	30점

- 참여교수의 평가기간 및 지급은 1년 1회로 한다.

* 연구활동 배점산정: 단독저자 100%, 주저자(교신) 및 2인 공동저자 70%, 3인 공동저자 50%, 4인 이상 공동연구는 30% 환산편수로 정한다.

* RT에 등록된 연구활동 실적은 배점을 2배로 산정하여 산출한다.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구분	평가내용
신규 참여자	1. 서류 심사 - 지원동기 - 학업 및 연구 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2. 면접 심사(필요 시) 3. 지도교수 추천(필요 시)
기존 (재)참여자	1. 직전학기 대학원 성적(3.0/4.5 이상) * 미충족시 1회 경고 2. 교육연구단 활동 * 80%이상 참여 - 교육연구단 주관 행사: 특강, 세미나, 콜로키움 등 - 교육연구단 연구팀 RT참여 -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및 활동: 연구아이디어 공모전, RT연구토론회, 스터디 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 *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정을 할 수 있다.
- * 기존(재)참여자의 경우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 교육연구단 활동 및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3] 신진연구인력 선발 기준

1. 신진연구인력 자격 기준

- 사회복지학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일제로 근무가능한 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연구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초빙분야의 세부전공 및 자격기준과 관련한 발표된 연구실적물
(단, 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음)

3.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출기준
연구 실적		국제학회지(SCOPUS급 이상)	100	환산
		국내학회지(등재후보지 이상)	50	
		저서	100	
		기타 연구실적	50	
연구 부문	연구능력	전문적 역량(연구 및 경력사항 등)의 우수성	30	면접
	연구계획	사업단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의 구체성	30	
사업단 운영부문	사업단 이해도	사업단 참여에 대한 의지와 계획 등의 적극성	20	
	인성 및 사회성	의사소통능력·인성·사회성 등의 충분성	20	

[별표4]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평가 기준

기여도	평가항목		배점(1회 기준)
교육 연구단 활동	교육연구단 운영	- 운영위원회 및 회의참석 - 산학연관 협력 및 MOU 체결 등	5점 10점
	교육연구단 행사	-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참석 횟수 : 학술행사, 콜로키움, 세미나, 워크숍 등	5점 (최대30점)
		-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준비 : 학술행사, 콜로키움, 세미나, 워크숍 등 - 해외석학 초청 및 특강연사 초청 기여 : 초청 1회당 20점, 2회 이상 초청 40점	5점 (최대30점) (최대40점)
	RT 참여	- RT 연구토론회 참석 : 참석자 3점, 토론자 5점, 발표자 10점 - RT 등록 및 참여 :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연구팀 등록 기준 : 1팀 당 10점, 3팀 이상 30점	(최대30점) (최대30점)
	기타	- 교육연구단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최대10점)
연구 활동	논문실적	- 국제저명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1편당 50점*
		- 국내 등재지(후보지) 및 기타 국제학술지	1편당 30점*
	학술대회 발표	- 구두(Oral) 발표*	국제 50점 국내 20점
		- 포스터(Poster) 발표*	국제 20점 국내 10점
	저·역서	- 저서(교육활동 관련) - 역서(교육활동 관련)	1편당 50점* 1편당 30점*

* 연구활동 배점산정: 단독저자 100%, 주저자(교신) 및 2인 공동저자 70%, 3인 공동저자 50%, 4인 이상 공동연구는 30% 환산편수로 정한다.

* RT에 등록된 연구활동 실적은 배점을 2배로 산정하여 산출한다.

[별표5]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평가 기준

기여도	평가항목		배점(1회 기준)
교육 연구단 활동	교육연구단 참여율	-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참석* 횟수 : 학술행사, 콜로키움, 세미나, 워크숍 등 : 불참사유서 제출 시 3점	참석 5점 불참 0점
	교육연구단 활동	- 매 학기 말 포트폴리오 제출 - 스터디 팀 활동 등	10점 5점
	RT 참여	- RT 연구토론회 참석 : 참석자 3점, 토론자 5점, 발표자 10점 - RT 등록 및 참여 :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연구팀 등록 기준 : 1팀 당 10점, 3팀 이상 30점	(최대30점) (최대30점)
	기타	- 교육연구단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박사 및 박사수료(멘토) 10점 : 석사(멘티) 5점 - 교육연구단 업무보조(보고서 작성 등)	(최대10점) 50점
연구 활동	논문실적	- 국제저명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1편당 50점*
		- 국내 등재지(후보지) 및 기타 국제학술지	1편당 30점*
	학술대회 발표	- 구두(Oral) 발표*	국제 50점 국내 20점
		- 포스터(Poster) 발표*	국제 20점 국내 10점
	수상 실적	- 학회 및 교내 수상 실적	10점

* 연구활동 배점산정: 단독저자 100%, 주저자(교신) 및 2인 공동저자 70%, 3인 공동저자 50%, 4인 이상 공동연구는 30% 환산편수로 정한다.

* RT에 등록된 연구활동 실적은 배점을 2배로 산정하여 산출한다.

[별표6] 행정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업무 처리	업무 지식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관련 업무의 지식도가 높다.	10		
	업무 속도	속도가 뛰어나며 긴급한 업무라도 신속히 처리가능 하다.	10		
	업무 수행능력	업무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믿을 수 있다.	10		
근무 태도	인간관계	교육연구단의 구성원과 협력하며 교육연구단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10		
	협조성	업무 지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0		
	규율	규칙을 준수하며 직장질서 유지에 노력한다.	10		
	복무상황	지각·결근을 하지 않는다.	10		
능력	창의력	업무추진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이 왕성하며 업무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	10		
	적극성	주어진 업무에 의욕적으로 일한다.	10		
	표현력	구두 및 문장에 의한 표현이 능숙하며 알기 쉽고 정확하다	10		
총점			100점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교육연구단장 (인)

[별표7] 국제협력 지원대상자 선발 및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지원기준	1. 교육연구단 내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갖는 학생이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생의 연구실적,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외연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가. 논문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합산 점수 나. 교육연구단의 세부 사업 참여 기여도 다.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 라. 그 외의 선발 대상자 기준은 국제협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를 수 있다. 3.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참여교수는 지도학생과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할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	1. 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및 지원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국제학술대회참가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및 부실학술지 체크리스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단계 BK21사업의 기준을 따른다. 나.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다. 교육연구단의 당해 연도 예산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 국제 지원대상자는 이후 결과 보고서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